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0)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해양수산부는 2021년 현행법 시행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과 해양치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전남 완도, 충남 태안 등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데, 최근 휴식·휴양 목적의 바다 방문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해양치유 관련 기술, 자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창업 등 지원 시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등 지원 시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6조의2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을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으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호에 따른”을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금의”를 “자금”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u> <u>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u> <u>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u>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 -----<u>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1. (개정안과 같음) 2. ----- -----<u>자금</u>----- 3. (개정안과 같음)

	<u>선틱 지원</u> <u>② 해양수산부장관</u> <u>은 제1항 각 호에</u> <u>따른 지원을 할 경</u> <u>우 「농어업경영체</u> <u>육성 및 지원에 관</u> <u>한 법률」 제2조제</u> <u>6호에 따른 어업경</u> <u>영체를 우대할 수</u> <u>있다.</u>	② (개정안과 같 음)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u> <u>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u> <u>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u>